

# 이용수칙 개정 전문

#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 제 1장 회원 및 강습

### 제 1조(목적)

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진남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회원)

- ① 진남수영장(이하 “수영장”)의 회원구분은 강습회원(일반강습반, 어린이반, 실버반), 월권 자유수영,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강습반(초급·중급·고급반) :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 마스터강습반 :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서 수영장 또는 망마국민체육센터에서 고급 강습반 3개월과정을 수료한 자
  3. 어린이반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4. 실버반 :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
  5. 자유수영반 :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 3조(회원가입신청)

강습회원 및 월권 자유수영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시 강습반은 1개반, 강습시간은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시 이용수칙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다.
5.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 후순위로 접수된다. 단, 강습 중

인 회원은 대기자 후순위 등록이 불가하다.

6.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강습반은 강습 중에도 대기 가능하다. 단, 마스터반 강습 중일 때는 제외한다.
7. 대기자의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법상 부부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양도 가능하다.

#### 제 4조(회원등록)

-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며,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미등록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 ③ 회원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이용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상시 가능하다. 단, 락커 상황에 따라 즉시이용이 아닌,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분실 시 즉시 수영장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재발급 수수료 2,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 제 5조(강습)

- 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
- ② 반별 강습시간(자유수영포함)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 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④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반 및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 ⑥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반 및 강습시간의 대기자 후순위로 대기할 수 있다.

## 제 6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

## 제 2장 반환 및 변경

### 제 7조(이용료 반환)

- 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2.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
  3. 강습시작 후 이용료 반환 시 총 결제금액의 10% 위약금과 사용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 후 반환.
  4. 제 1항 제 2호 및 3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제 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 공제 : 총 결제금액 × 10%
  2. 이용일수 공제 : (결제금액 / 이용가능기간) × 이용일수
  3. 제 2호의 이용가능기간은 1개월 결제분 기준 30일을 의미한다.
-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제 3호의 경우 강습종료일 15일 미만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운영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단, 어린이회원은 등본 상 보호자의 통장계좌에 지불할 수 있다.

### 제 8조(회원기간 연기)

- ① 회원은 3개월 단위마다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단, 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연기신청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연기신청은 소요기간이 최소 5일 이상이고,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 9조(운영시간)

- ①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00부터 20:2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30까지이다.
- ②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수영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 시
  -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제 3장 시설의 이용

### 제 10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는 수영장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 3. 여성회원으로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
- 4.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 5.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 6.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7.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가족,선생님,인솔자)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8.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 9.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

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

### 제 11조(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폴,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화장실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을 바른 경우
2. 심신질환, 전염성질환, 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3.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
4. 본인 강습반이 아닌,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초급오전반 → 초급저녁반, 자유수영 → 초급새벽반 등등)
5.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할 경우
6. 타인에게 특정 영법, 수모,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
7.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8.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제 12조(손해배상)

① 수영장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 데스크에 보관 가능)

③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④ 수영장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 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 제 13조(분실물)

락커룸, 샤워실 등 수영장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제 14조(고지)

수영장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 15조(기타)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 수영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제 16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② 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본 이용수칙은 2020. 00. 00. 부터 시행한다.